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7.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7. 19.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박종길 의원 등 7명(손범구, 장호섭, 김정희, 이진환, 정창근, 도하석)
- 발의일자: 2024. 7. 5.(금)
- 회부일자: 2024. 7. 5.(금)
- 검토기간: 2024. 7. 5.(금) ~ 7. 12.(금)

2. 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 법령 및 현행조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4. 7. 5. ~ 7. 15.)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중 환경보전시책을 위한 구민참여추진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관련법령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5조(협의회 설치 등)부터 제17조(협의회 구성 등)에서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경비의 지원)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 등 우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 현 행 조 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제8조제4항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제7조제3항제4호및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제7조제3항제5호및제8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구청장은 법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제9조제4항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

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이하 “추진상황”이라 한다)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구청장은 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① 구청장은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

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교육국장, 복지증진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기획전략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보전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달서의제21”이란 21세기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③ 구는 SRF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2종이상 사업장이 고형연료를 소각하기 위해 입지할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등의 역할)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이 환경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예측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등)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환경정화 활동사업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환경교육·홍보)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설치)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달서시의제21」 추진기구인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를 둔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업가, 환경전문가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달서시의제21」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19. 5. 21.)]

제15조(회장의 직무)(개정 2016. 10. 4.)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 10. 4.)

-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간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과장이 된다.

제18조(수당)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 고 사 항】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 1992년 리우선언 이후 각국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권고
- 1999년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 정부 건의
- 2000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국제연합(UN)의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 2006년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 수립
 -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
-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 2009년 대통령 직속기구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구
 -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 지위 격하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0) 수립
-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 수립
- 2018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1~40) 수립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복원
 - 소관부처 환경부 → 국무조정실 격상

□ 국제연합(UN)

1) 1992년 브라질 “리우선언”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선언”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의 정신을 확대 강화시킨 것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3)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및 전세계적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 간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공동목표 추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임.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